

## 부산대학교 생명산업융합연구원 표준운영세칙

제1조(목적) 이 시행세칙은 「부산대학교 연구시설 설치·운영에 관한 규정」 제26조에 의거 생명산업융합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생명자원과학 분야 및 생명산업융합 분야의 연구와 학술교류
2. 산하 연구센터의 연구 활동 지원
3. 수탁 및 용역 연구의 수행
4. 학술자료와 간행물의 발간
5. 연구과제 발굴을 위한 지원
6. 우수 연구인력양성
7. 산학협력활동 지원
8. 기타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

제3조(임원) ① 연구원에 원장을 두되, 원장은 부산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② 연구원에 부원장을 두되, 부원장은 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4조(조직 및 기능) ① 연구원에는 연구기획실과 연구지원실을 둔다.

② 각 실에 실장을 두고, 각 실장은 원장이 위촉한다.

③ 연구기획실과 연구지원실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.

1. 연구기획실 : 과제수주 지원, 대외홍보 및 협력, MOU체결, 학술대회 개최, 연구원 주관행사, 연보발행 등에 관한사항
2. 연구지원실 : 행정지원, 예산 편성·집행·정산, 연구능률성과급 지급, 운영위원회 개최 등에 관한사항

④ 연구원에는 연구센터를 둘 수 있다.

1. 생명자원개발연구센터
2. 지역개발연구센터
3. 산업과학기술연구센터
4. 말과학연구센터
5. 선충연구센터
6. 의료소재기기연구센터
7. 국제창의혁신휴먼센터
8. 항노화소재개발연구센터
9. 바이오환경기술연구센터
10. 식물유전육종센터
11. 미래생명연구자원센터

⑤ 연구센터장은 원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연구원 등) ① 연구원에 연구교수, 연수연구원, 객원연구원, 전임연구원, 특별연구원, 연구보조원,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교수는 연구원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연수연구원은 연구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이나 타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관련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원의 연구와 발전에 필요한 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고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.

⑤ 전임연구원은 연구원의 업무와 관련되는 학문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중에서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1년

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⑥ 특별연구원은 학사학위 소지자로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

⑦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·박사과정 재학생(수료자 포함)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. 다만 필요한 경우 특수기능 소지자도 임명할 수 있다.

⑧ 연구원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둔다.

제6조(운영위원회) ①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15인 내외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원장이 위원장이 된다.

③ 운영위원은 부원장과 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하며, 원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과 운영
2. 예산과 결산 심의
3. 규정 개정과 폐지
4. 연구센터 평가 및 개폐
5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자문위원) 연구원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, 자문위원은 생명자원과학분야에서 10년 이상 연구경력을 갖는 전문가로서 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제8조(기타) 기타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시행세칙은 2020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